

# 2009년 수입식품 현황

## Current Status of Imported Foods in 2009

오금순\*, 김현진, 장화중, 최은주, 이찬녕, 고송부  
Keum Soon Oh\*, Hyun-Jin Kim, Hwa-Jong Jang, Eun-Ju Choi, Chan-Nyoung Lee, Song-Boo Ko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수입식품과  
Food Import Division, Food Safety Bureau, Korean Food & Drug Administration

### 1. 서론

우리나라는 주요 곡물 및 가공식품의 상당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그 양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2007년부터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와 물류환경 개선 등으로 수입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소비자들은 수입식품의 안전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입식품의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입식품을 관리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개발도상국 등의 제조업소 현지실사, 위해정보 상시 모니터링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식품 수입 영업자도 이러한 국제적 추세 및 국내 소비자의 요구 등을 잘 인식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안전성에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수입하고자 하는 식품이 우리나라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안전성을 미리 확인하여 수입할 필요가 있으며(1,2), 국내 제조·가공되는 제품과 달리 수입식품은 그 안전성에 대하여 최종제품만을 가지고 검사·판단하게 되므로, 수입자가 수출국의 생산지 농

약 사용이나 제조업체의 원료구입부터 제조·가공하여 완제품이 생산될 때까지의 위생관리 등을 점검하여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여야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나라 수입식품 제도를 살펴보면, 수입통관은 외국 물품을 수입하고자 할 때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세관통관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하며, 그 물품 중 국민보건, 환경보호, 사회 안전과 직결되는 물품 등에 대하여는 지식경제부 장관이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으로 공고하여, 그 요건이 구비되고 세관장이 확인할 때까지 그 통관을 보류하도록 하고 있다(3,4). 따라서, 식품은 수출입요건 구비대상물품에 해당되며, 검역(Quarantine)과 검사(Inspection)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수입식품의 검사는 여러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담당 기관은 표 1과 같으며, 수입신고 수리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수입식품을 검사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검사종류로는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및 무작위표본검사로 구분하며(1,2), 서류검사(Document test)는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대상 식품으로는 외화획득용으로 수입

\*Corresponding author: Keum Soon Oh  
Food Import Division, Food Safety Bureau, Korean Food & Drug Administration  
194 Tongil-ro, Eunpyong-gu, Seoul 122-704, Korea  
Tel: +82-2-380-1733  
Fax: +82-2-388-6392  
e-mail: puregold@kfda.go.kr

표 1. 우리나라 식품별 근거법령 및 관장기관

구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근거법령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위생법 및 행정권한의위임 및 위탁에 관한규정
검사품목	영업상 목적으로 수입하는 모든 농·임산물, 가공식품(축산물가공 처리법 대상 식품 제외), 식품첨가 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 기능식품	수입축산물 및 그 가공품(식육, 원 유, 식육가공품, 우지, 돈지, 유가 공품, 알가공품 등)	첨가물이나 다른 원료를 일체 사용하지 아니하고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단순 처리한 수산 물(활어패류, 신선·냉장품, 염장품, 어란, 훈제품, 해조류, 건제품, 냉동품)
관장부서	식품의약품안전청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청

※ 수산물은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단,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



수입



보세구역 반입



민원인 수입신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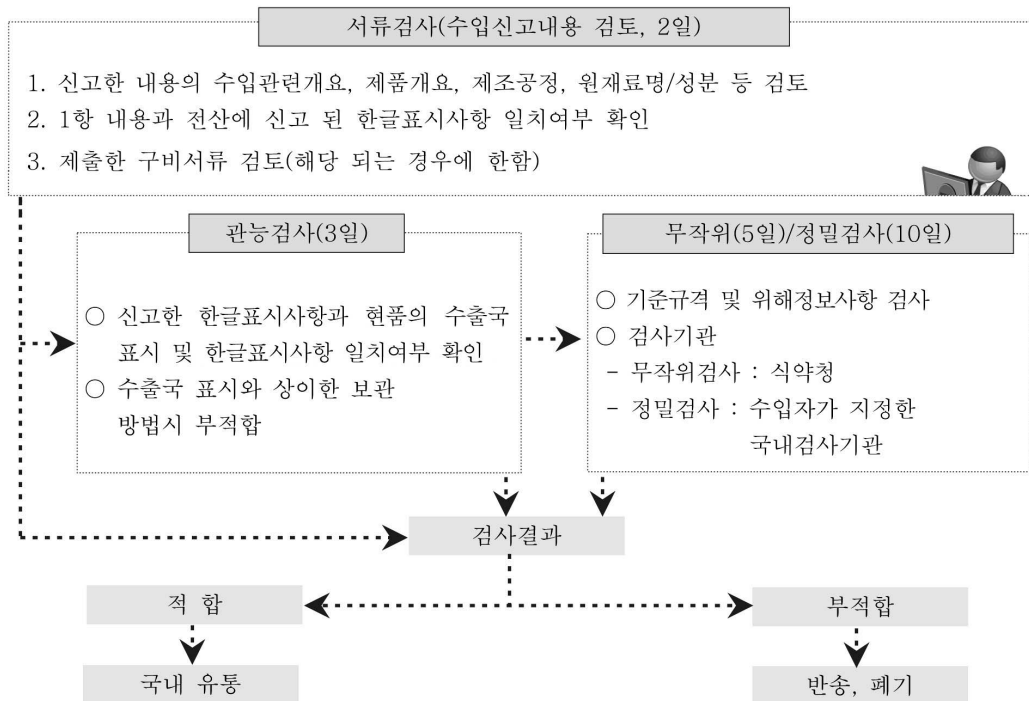


그림 1. 수입식품의 신고수리 절차

하는 식품, 자사제조용 식품, 연구조사용 식품, 정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입하는 식품, 식용향료(조합향료 및 단일성분의 착향료 포함), 판매 목적의 선천성 대사 이상 질환자용 식품 등이다.

관능검사(Sensory test)는 제품의 색상·맛·냄새·색깔·표시·포장상태·정밀검사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부를 판단하는 검사로서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원료성의 농·임·수산물, 서류검사의 대상 중 관능검사가 필요한 식품, 보세구역 내에서 압류·몰수하여 검사 요구한 것으로서 그 물량이 수거필요량의 10배 이하인 식품, 정밀검사를 받았던 농·임·수산물 중 생산국·품명·수출업자(또는 수출업소) 및 포장장소가 동일한 식품 등을 검사한다.

정밀검사(Laboratory test)는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서류검사 및 관능검사를 포함하며, 검사 대상 식품은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 국내외에서 유해물질 등이 함유된 것으로 알려져 문제 제기된 식품, 부적합 처분을 받은 식품 등의 경우로서 처분을 받은 날부터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한 제조업자의 동일식품,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식품 등의 경우로서, 판정을 받은 날부터 5회까지 재수입되는 동일한 제조업자의 동일식품, 관능검사결과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식품,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식품등을 수입신고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입하는 모든 식품, 정밀검사를 한 식품등 중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식품 등을 검사한다.

무작위표본검사(Random test)는 정밀검사 대상을 제외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표본추출계획에 의하여 물리적·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로서 식용향료를 제외하고, 정밀검사를

받았던 동일사 동일식품, 서류검사 또는 관능검사 대상 중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 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무작위표본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검사한다. 이러한 종류별로 검사한 수입식품은 수입단계에서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 등의 기준 및 규격(5-10)을 위반한 식품은 전량 제조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처리하고 있다.

수입식품 검사업무는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는 수입 수산물의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해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하고,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검사하고 있다. 이들 식품들을 제외한 식품 또는 품목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검사한 수입식품은 년 평균 약 250,000여건, 중량은 11,400,000여톤, 금액은 8,400,000천달러 수준이었다.

한편, 소비자들에게 수입식품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일환으로 1998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식품등 검사연보」를 매년 발간하여 배포하고 있고, 홈페이지에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통계청의 국가승인 통계로 승인되어 관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09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된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의 수입현황을 분석하였다.

## II. 수입식품 현황

2009년도 수입신고 건수는 총 255,341건('08년 254,809건), 중량은 11,302천톤('08년 11,732천톤), 금액은 8,434백만달러('08년 9,861백만달러) 수입하였으며, 2008년에 비해 수입건수는 약 0.2% 증가, 중량은 3.7%

표 2. 연도별 수입 현황

년도	수입건수	증가율(%)	중량(kg)	증가율(%)	금액(USD)	증가율(%)
2005년	215,494	9.4 ↑ <sup>1)</sup>	11,261,441,723	1.7 ↓ <sup>1)</sup>	7,586,286,693	16.6 ↑ <sup>1)</sup>
2006년	238,539	10.7 ↑	11,227,512,964	0.3 ↓	7,811,984,190	3.0 ↑
2007년	270,163	13.3 ↑	11,798,942,964	5.1 ↑	8,449,259,832	8.2 ↑
2008년	254,809	5.6 ↓	11,731,828,599	0.6 ↓	9,860,939,224	16.7 ↑
2009년	255,341	0.2 ↑	11,301,537,120	3.7 ↓	8,434,080,763	14.5 ↓

<sup>1)</sup> 2004년도 수입건수 196,968건, 중량 11,454,464,275kg, 금액 6,503,681,634USD을 기준으로 2005년도 증가율 산출

표 3. 검사종류별 연도별 수입 건수 현황('05~'09년)

년도	수입건수	서류검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포함)	정밀검사	무작위표본 검사
2005년	215,494	146,058 (67.8%)	29,414 (13.6%)	40,022 (18.6%)	34,274 (15.9%)	5,748 (2.7%)
2006년	238,539	165,007 (69.2%)	24,010 (10.0%)	49,522 (20.8%)	38,057 (16.0%)	11,465 (4.8%)
2007년	270,163	179,985 (66.6%)	27,972 (10.4%)	62,206 (23.0%)	46,104 (17.1%)	16,102 (5.9%)
2008년	254,809	172,909 (67.9%)	23,863 (9.3%)	58,037 (22.8%)	43,281 (17.0%)	14,756 (5.8%)
2009년	255,341	149,057 (58.4%)	27,378 (10.7%)	78,906 (30.9%)	50,585 (19.8%)	28,321 (11.1%)

감소, 금액은 14.5% 감소하였다(표 2). 이는 2009년 관세청 통계 자료 즉,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물품의 총 수입건수(6,699,545건) 및 수입금액(323,084백만달러)(11)에 비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수입되는 식품의 건수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3.8% 및 2.6%를 차지하였다.

한편, 최근 5년간(2005-2009년) 수입식품의 현황을 살펴보면, 수입건수는 2007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후 2008년에는 감소하였고, 중량은 2007년에는 증가 후 감소추세이며, 금액은 2008년까지 증가하였으나 2009년에는 2007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감소하였다(표 2).

### 1. 검사종류별 수입현황

서류검사 149,058건(58.4%), 관능검사 27,378건(10.7%),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28,321건 포함; 11.1%) 78,909건(30.9%)으로, 정밀검사 비율은 2008년에 비해 약 8%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검사종류별 수입현황은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 비율은 2005년에는 18.6%, 2006년에는 20.8%, 2007년에는 23.0%, 2008년에는 22.8%, 2009년에는 30.9%로 점차적으로 증가하였다(표 3). 2009년 정밀검사 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최초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와 기준 및 규격의 신설·강화에 따른 검사로 약 3% 증가하였고, 무작위표본검사는 약 5%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외국의 정밀검사 비율은 일본 11.0%(2008년), 미국 0.9%(2008년)에 비하면 우리나라 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다(12).

### 2. 품목군별 수입현황

품목군별 수입건수로 비교 시 가공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 농·임산물,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순으로 수입되었으며, 중량으로는 농·임산물, 가공식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의 순이고, 금액은 가공식품, 농·임산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순이었다(표 4).

최근 5년간 품목군별 수입건수는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2008년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도에는 총 124개국에서 1,587개 품목을 수입하였으며, 품목군별로 농·임산물 522개 품목, 가공식품 219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200개 품목, 식품첨가물 521개 품목, 기구 또는 용기·포장 125개 품목이었다.

이중 수입건순으로 식품첨가물인 혼합제제(14,156건), 가공식품 중 과일주(13,221건), 기구류 중 스테인레스제(7,464건), 가공식품 중 배추김치(6,823건), 과자(6,741건) 순이었고, 중량순으로는 농·임산물인 밀/제분용(1,980,289톤), 가공식품 중 정제, 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1,918,916톤), 농·임산물인 옥수수/알곡

표 4. 품목군별 연도별 수입 현황('05~'09년)

년도	총 수입건수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2005년	215,494	33,051	126,422	7,006	28,225	20,790
2006년	238,539	35,643	141,474	7,223	30,038	24,161
2007년	270,163	39,277	165,129	6,988	31,073	27,696
2008년	254,809	35,026	155,536	6,533	31,423	26,291
2009년	255,341	33,118	139,782	7,062	31,111	44,268

년도	총 수입중량(kg)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2005년	11,261,441,723	7,348,692,248	3,554,103,819	13,173,688	167,172,000	178,299,968
2006년	11,227,512,964	7,147,745,728	3,706,986,520	11,254,894	172,740,029	188,785,793
2007년	11,798,942,964	7,261,434,031	4,120,586,646	10,009,298	193,753,402	213,159,587
2008년	11,731,828,599	6,887,118,713	4,406,699,278	8,233,512	218,179,167	211,597,929
2009년	11,301,537,120	6,526,682,835	4,355,840,634	7,872,090	204,190,678	206,950,882

년도	총 수입금액(USD)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2005년	7,586,286,693	2,336,561,479	3,663,830,692	581,052,157	475,362,977	529,479,388
2006년	7,811,984,190	3,048,728,368	3,459,744,063	229,731,978	469,812,354	603,967,427
2007년	8,449,259,832	3,121,232,166	3,885,229,643	215,050,950	519,267,705	708,479,368
2008년	9,860,939,224	3,990,610,381	4,339,584,725	220,549,819	615,409,449	694,784,850
2009년	8,434,080,763	3,169,655,626	3,674,695,756	209,671,458	550,152,783	829,905,140

표 5. 품목(상위 10개 품목) 수입 현황

번호	품목(수입건수)	건수	품목(중량순)	중량(kg)	품목(금액순)	금액(USD)
	합 계					
1	혼합제제	14,156	밀/밀(제분용)	1,980,289,331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948,207,663
2	과실주	13,221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	1,918,916,072	대두/건조	603,395,820
3	기구류 중 스테인레스제	7,464	옥수수/알곡	1,443,745,652	밀/밀(제분용)	488,488,660
4	배추김치	6,823	대두/건조	1,122,671,356	옥수수/알곡	348,055,161
5	과자	6,741	천일염	319,868,978	커피/건조	223,952,243
6	기구류 중 폴리프로필렌	6,617	쌀/매현미/알곡	226,135,230	과·채가공품	181,865,350
7	기타가공품	6,260	카사바(타피오카)/건조	218,477,330	쌀/매현미/알곡	177,912,124
8	과·채가공품	6,236	바나나/신선, 냉장	182,707,492	기타가공품	165,853,239
9	기구류 중 도자기제	6,099	정제소금	152,868,928	위스키	163,208,826
10	볶은커피	4,497	고추/냉동	151,034,036	혼합제제	157,767,572



(1,443,746톤), 대두/건조(1,122,671톤), 가공식품 중 천 일염(319,869톤) 순이고, 금액순으로는 가공식품 중 정제·가공을 거쳐야 하는 식품원료(948,208천달러), 농·임산물인 대두/건조(603,396천달러), 밀/제분용(488,489천달러), 옥수수/알곡(348,055천달러), 커피/건조(223,952천달러) 순으로 수입되었다.

한편, 품목별로 주로 수입되고 있는 국가로는 혼합제제는 일본, 배추김치는 중국, 기구류중 스테인레스제는 중국, 과실주(포도주 포함)는 프랑스, 기구류중 폴리프로필렌은 중국으로 조사되었다(표 5).

### 3. 국가별 수입현황

2009년도에는 총 124개 국가에서 수입하였으며, 이중 상위 5개 국가의 수입건수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으로 2008년과 유사하였고, 중량은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헝가리 순, 금액은 중국, 미국, 호주, 브라질, 일본 순이었다(표 6).

이중 상위 5개 국가(수입건수)의 수입 점유율은 약 60% 이상으로 수입건수는 중국, 일본,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순이고, 중량은 미국, 호주, 중국, 브라질, 헝가리 순, 금액은 중국, 미국, 호주, 브라질, 일본 순이었다(그림 2).

외국의 경우, 2009년도 중국(13)의 주요 수입국(금액순)은 미국, 브라질 순, 미국(14)은 연도별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금액순)로 국가별로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 순이었다.

### 4. 유기농 식품의 수입현황

유기농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유기농 관련 표시를 한 유기식품으로서 제품명에 “유기(organic)” 관련 표시한 제품을 말하며(9), 2009년에는 총 43개국에서 3,686건, 21,293톤, 39,735천달러 수입하였으며, 연도별로 유기농 식품은 2005년 29개국, 2006년 35개국, 2007년 35개국, 2008년 45개국에서 수입되었다(표 7, 그림 3).

유기농 식품은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고, 중량과 금액은 2008년에 비해 각각 약 16% 및 약 30% 감소하였다.

2009년의 경우 국가별 수입건수로는 미국(1,021건), 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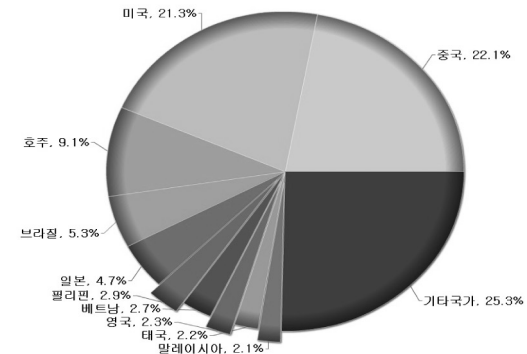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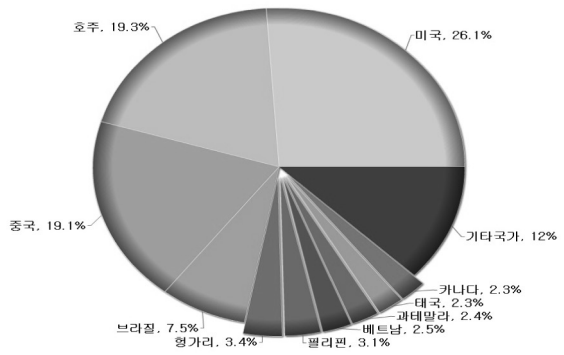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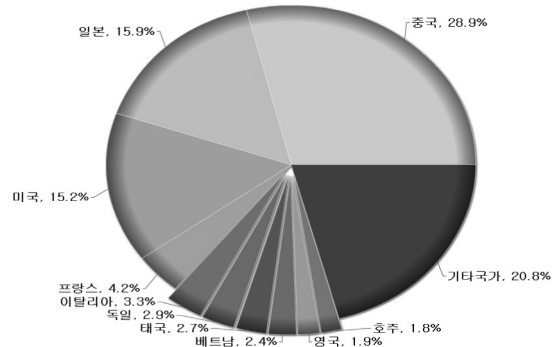


그림 2. 국가별 수입신고 현황; 건수(A), 중량(B) 및 금액(C)

일(573건), 영국(217건), 오스트리아(203건), 이탈리아(161건) 순이고, 중량은 브라질(2,822톤), 필리핀(2,805톤), 미국(2,780톤), 호주(2,665톤), 중국(2,447톤) 순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유기농 식품이 2008년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았다(표 8).

품목별로 수입건수는 침출차(442건), 과·채가공품(297

표 6. 국가별 수입 현황

번호	국 가	건수	'08년 순위	국 가	중량(kg)	'08년 순위	국 가	금액(USD)	'08년 순위
1	중국	73,770	1	미국	2,944,365,661	1	중국	1,863,791,209	2
2	일본	40,467	3	호주	2,184,529,646	3	미국	1,797,143,531	1
3	미국	38,825	2	중국	2,158,291,477	2	호주	767,395,187	3
4	프랑스	10,800	4	브라질	852,774,397	4	브라질	449,096,889	4
5	이탈리아	8,426	5	헝가리	393,174,762	16	일본	396,626,281	5
6	독일	7,160	7	필리핀	346,832,787	5	필리핀	239,857,452	9
7	태국	6,787	6	베트남	294,824,709	7	베트남	221,442,525	6
8	베트남	6,242	8	과테말라	265,404,734	12	영국	197,715,796	7
9	영국	4,790	11	태국	258,791,179	6	태국	187,356,081	10
10	호주	4,481	10	캐나다	53,095,688	8	말레이시아	177,936,480	8

표 7. 유기농 식품의 연도별 수입 현황

년도	제조국가	수입건수	중량(kg)	금액(USD)
2005년	29개국	2,078	8,410,531	18,351,453
2006년	35개국	2,451	14,635,488	27,486,073
2007년	35개국	3,009	23,867,595	40,357,998
2008년	45개국	3,844	25,350,022	56,604,304
2009년	43개국	3,686	21,293,130	39,735,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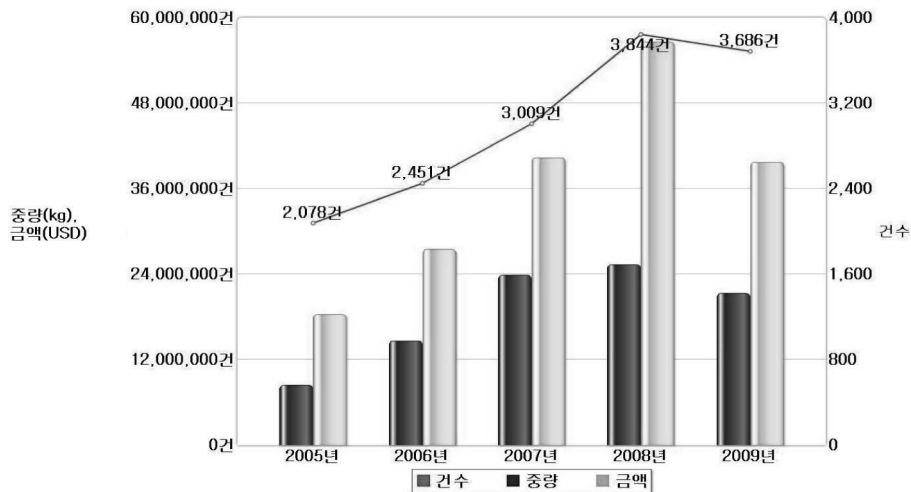


그림 3. 유기농 식품의 연도별 수입 현황

표 8. 유기농 식품의 국가별(상위 5개국) 수입 현황

국가 번호 (수입건순)	수입건수	2008년		국가 (중량순)	중량(kg)	2008년		
합 계	3,686		3,844		21,293,130		25,350,022	
1	미국	1,021	미국	1,164	브라질	2,822,073	미국	4,632,938
2	독일	573	독일	422	필리핀	2,805,556	중국	4,127,983
3	영국	217	이탈리아	302	미국	2,780,216	호주	2,738,996
4	오스트리아	203	프랑스	241	호주	2,665,068	필리핀	2,197,166
5	이탈리아	161	호주	169	중국	2,446,787	브라질	2,112,018

건, 과자(230건) 순이고, 중량은 갈색설탕(3,544톤), 바나나(3,165톤), 과·채가공품(1,660톤) 순으로 2008년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2008년의 경우 수입건수로는 곡류가공품(202건), 과실주(174건), 침출차(146건) 순이고, 중량은 과·채가공품(2,432톤), 갈색설탕(2,336톤), 바나나(2,141톤) 순이었다(표 9).

### III. 수입단계에서 부적합 현황

수입통관 단계에서 우리나라 기준 및 규격에 부적합 경

우 폐기 또는 제조국으로 반송되어 국내에 유통되지 않으므로 부적합 현황은 수입단계 안전관리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2009년에 수입된 식품의 부적합 건수는 1,229건(0.48%), 중량은 5,376톤, 금액은 11,228천달러였으며, 부적합 건수는 2008년보다 많았으나 연도별로 부적합 비율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다. 중량은 2008년까지 증가, 2009년에는 감소하였고, 금액은 2007년까지 증가한 반면 2008년부터는 감소하였다(표 10, 그림 4).

한편 연도별 부적합 건수로, 2005년은 953건, 2006년

표 9. 유기농 식품(상위 10개 품목) 수입 현황

번호	품목(수입건순)	수입건수	2008년	품목(중량순)	중량(kg)	2008년		
합 계		3,686건	3,844		21,293,130	25,350,022		
1	침출차	442	곡류가공품	202	갈색설탕	3,543,887	과·채가공품	2,432,325
2	과·채가공품	297	과실주	174	바나나 (신선, 냉장포함)	3,164,785	갈색설탕	2,335,476
3	과자	230	침출차	146	과·채가공품	1,660,488	바나나/신선	2,141,386
4	과·채주스	133	기타영·유아식	134	당류가공품	1,149,054	과실류·채소류 가공품	1,831,839
5	기타가공품	114	과·채가공품	129	침출차	1,087,709	대두/건조	1,760,000
6	볶은커피	112	과자	120	밀/밀(제분용)	983,280	곡류가공품	1,210,466
7	갈색설탕	105	볶은커피	110	밀/알곡, grain	928,000	밀/알곡, grain	1,010,000
8	파스타류	104	바나나/신선	106	강력밀가루	903,056	강력밀가루	996,061
9	곡류가공품	101	기타가공품	102	두류가공품 (대두분)	824,602	밀/밀 (제분용)	989,152
10	기타영·유아식	97	초콜릿가공품	100	과·채페이스트	608,053	두류가공품 (대두분)	700,285

※ 식품공전과 개정공전(2007.10.31)에 따라 2008년 자료에는 유사한 품목의 중복이 있을 수 있음



표 10. 연도별 부적합 현황

년도	건수	비율(%)	중량(kg)	비율(%)	금액(USD)	비율(%)
2005년	953	0.41	3,249,014	0.03	7,521,247	0.10
2006년	922	0.36	4,682,762	0.04	9,127,735	0.12
2007년	1,448	0.54	7,467,783	0.06	13,567,044	0.16
2008년	1,020	0.40	13,128,643	0.11	13,408,925	0.14
2009년	1,229	0.48	5,375,763	0.05	11,227,836	0.13

표 11. 품목군별 연도별 부적합 현황('05~'09년)

년도	부적합 건수	농·임산물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
2005년	953	86	581	220	35	31
2006년	922	60	648	170	22	22
2007년	1,448	67	1,156	166	30	29
2008년	1,020	48	778	137	23	34
2009년	1,229	37	718	114	30	3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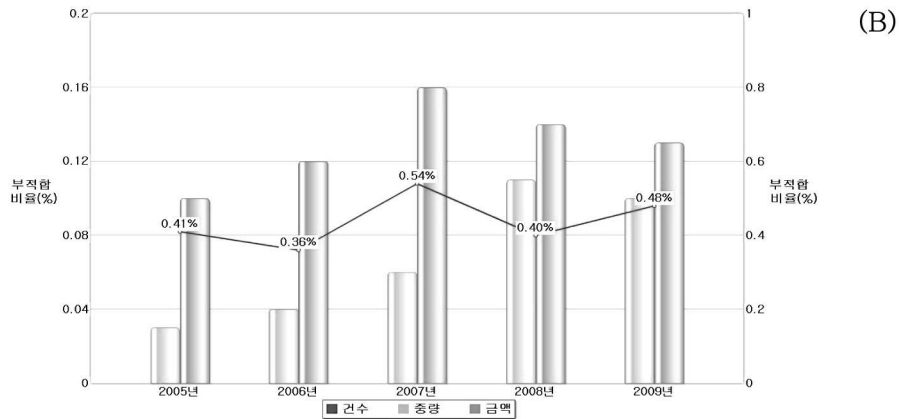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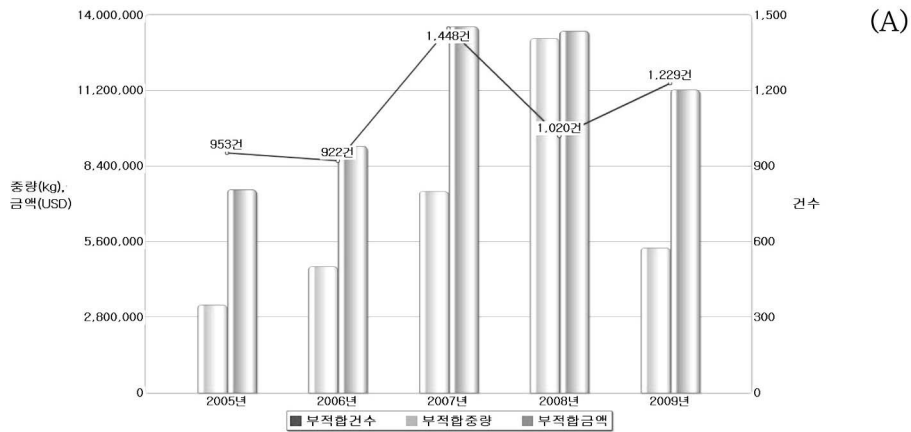


그림 4. 연도별 부적합 현황; 건수, 중량 및 금액(A) 및 비율(B)

은 922건, 2007년은 1,448건, 2008년은 1,020건으로 농·임산물은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은 2008년과 유사하나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2008년에 비해 많은 제품이 부적합으로 처리되었다(표 11). 이는 수입건수 증가와 기준 및 규격 항목이 신설 또는 강화되면서 검사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 1. 검사종류별 부적합 현황

2009년의 수입식품 부적합은 검사종류별로 서류검사 7건, 관능검사 18건,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 214건) 1,204건으로 총 부적합 비율은 0.48%로, 이중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의 부적합 비율은 0.47%로 전체 부적합의 약 98% 차지하였다(표 12).

수입식품의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에 의한 부적합 건수는 2005년은 881건, 2006년은 858건, 2007년은 1,375건, 2008년은 978건, 2009년은 1,204건이었으며(그림 5), 연도별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 검사 건수 대비 부적합 비율은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2005년은 2.2%, 2006년은 1.7%, 2007년은 2.2%, 2008년은 1.7%이고, 2009년은 1.5%를 차지하였다.

### 2. 품목군별 부적합 현황

2009년 부적합은 품목군별로 농·임산물은 37건, 가공식품은 718건, 건강기능식품은 114건, 식품첨가물 30건, 기구 또는 용기·포장 330건으로, 부적합 건수는 가공식

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순이고, 중량은 가공식품이 3,935톤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농·임산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며, 금액은 가공식품 6,678천달러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기구 또는 용기·포장과 건강기능식품이었다(표 11).

부적합 품목은 총 240개 품목으로 농·임산물은 27개 품목, 가공식품 95개 품목, 건강기능식품 58개 품목, 식품첨가물 22개 품목, 기구 또는 용기·포장 38개 품목이었다. 이중 부적합 건수로 농·임산물은 마늘/꽃줄기, 작약/뿌리, 부추/냉동, 지황/뿌리, 황기/뿌리 순이고, 가공식품은 기타가공품, 향신료조제품, 과자, 천연향신료, 수산물가공품 순, 건강기능식품은 복합영양소제품,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코사헥사엔산(DHA) 함유제품, 옥타코사놀함유유지 제품, 인삼농축액, 갈슘 순, 식품첨가물은 올레오레진캡시킴, 포도종자추출물, 클로로필, 효모추출물, 글루코노델타락톤 순이며,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기구류중 스테인레스제, 금속제, 폴리프로필렌, 도자기제, 범랑도포 순이었다(표 13).

### 3. 국가별 부적합 현황

2009년에는 수입국가 124개국 중 부적합 품목 제조국가는 46개국으로 매년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연도별로는 2005년 50개국, 2006년 45개국, 2007년 44개국, 2008년 47개국이었다(표 14).

2009년에는 국가별로는 중국(449건), 미국(151건), 일본(85건), 이탈리아(67건), 태국(62건), 베트남(52건), 대만(43건), 독일(40건), 인디아(31건), 인도네시아(26건)

표 12. 검사종류별 부적합 현황

구분	수입신고			부적합			부적합율 (%, 건수기준)
	수입 건수	중량 (kg)	금액 (USD)	부적합 건수	중량 (kg)	금액 (USD)	
합계	255,341	11,301,537,120	8,434,080,763	1,229	5,375,763	11,227,836	0.48
서류검사	149,057	7,959,747,863	5,713,394,837	7	58,840	54,144	0.00
관능검사	27,378	701,145,820	804,282,143	18	90,232	118,832	0.01
정밀 검 사	88,906	2,640,643,436	1,916,403,784	1,204	5,226,691	11,054,860	0.47
정밀검사	50,585	2,110,353,497	1,344,162,480	990	3,313,662	7,718,999	0.39
무작위 표본검사	28,321	530,289,939	572,241,304	214	1,913,029	3,335,861	0.08

순이었으나, 이들 상위 10개 국가를 위주로 각 국가별 수입건수 대비 부적합 비율은 대만, 인디아, 태국, 베트남, 이탈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독일, 미국, 일본 순이었다.

#### 4. 부적합 사유별 현황

2009년 수입식품의 부적합 사유는 주로 기준·규격 위반, 미생물 기준 위반, 식품첨가물 사용 위반 등(표 15)으

로, 기준·규격 위반(483건)은 제품의 품질규격(영양소 함량 등)이 주요 내용이며, 식품첨가물 위반(280건)은 보존료, 이산화황, 타르색소 등의 사용 기준 위반이며, 미생물 기준 위반(242건)은 세균수, 대장균군, 세균발육 등이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17건)은 제초제인 acetochlor, pyrethroid계 살충제인 bifenthrin, pro-살충제 즉, 숙주에 들어간 후 활성 살충제로 대사되는 chlorfenapyr 등이 있으며,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17건)에는 니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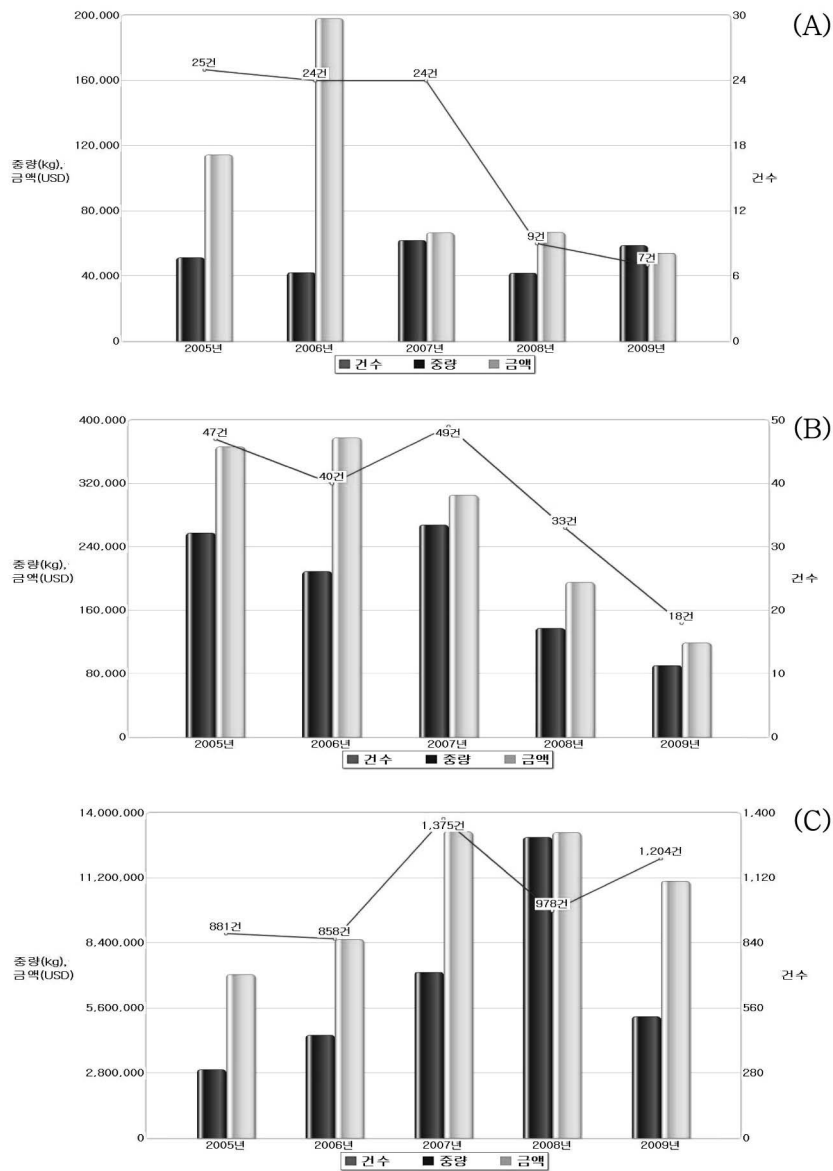


그림 5. 연도별 검사종류별 부적합 현황; 서류검사(A), 관능검사(B), 정밀검사(무작위표본검사 포함, C)

로푸란계, 클로람페니콜 등이 있다.

곰팡이 독소 잔류기준 위반(8건)에는 자연계에 약 300여종이 분포되어 있는 곰팡이 독소류 중 *Aspergillus* 속에 의해서 생성되는 아플라톡신이 있으며, 이 독소는 덩

고 건조한 지역에서 주로 발생된다는 연구보고가 있다. 또한, 제조·가공중에 생성되는 벤조피렌 위반(19건), 기타 유해물질 위반(17건)에는 비만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발기부전치료제 및 그 유사물질 등이 있다.

표 13. 품목별(상위 5개 품목) 부적합 현황

품목군	품 목	부적합 현황		
		건수	중량(kg)	금액(USD)
	합 계(240개 품목)	1,229	5,375,763	11,227,836
농·임산물	계(27개 품목)	37	923,483	674,624
	마늘/꽃줄기(마늘종)/신선, 냉장	4	96,000	105,120
	작약(백작약, 참작약)/뿌리/건조	3	25,560	33,744
	계피(육계)/건조	2	150	925
	도라지/건조	2	5,900	16,350
	둥글레/건조	2	17,010	31,076
가공식품	계(95개 품목)	718	3,935,389	6,678,129
	기타가공품	60	88,892	376,932
	향신료조제품	48	231,292	216,978
	과자	40	100,014	254,153
	천연향신료	35	724,350	412,999
	수산물가공품	34	152,637	1,174,168
건강기능식품	계(58개 품목)	114	38,534	1,119,960
	복합영양소제품	10	1,303	60,022
	에이코사펜타엔산(EPA) 및 도코사헥사엔산(DHA) 함유제품	9	10,162	198,805
	옥타코사놀함유유지제품	6	81	40,026
	스피루리나 제품	6	1,864	105,513
	인삼농축액	5	10,500	272,000
식품첨가물	계(22개 품목)	30	40,067	375,312
	올레오레진캡시킵	5	3,350	66,414
	포도종자추출물	3	145	42,988
	클로로필	2	130	5,678
	효모추출물	2	26,020	127,254
	글루코노델타락톤	1	5,000	7,750
기구 또는 용기·포장	계(38개 품목)	330	438,290	2,379,811
	기구류중 스테인레스제	88	96,461	425,365
	기구류중 금속제	86	110,166	583,117
	기구류중 폴리프로필렌	27	35,116	195,675
	기구류중 도자기제	12	18,850	52,455
	기구류중 법랑도포	12	30,016	96,656

표 14. 국가별(상위 10개국) 연도별 부적합 건수 현황

번호	국 가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005년
	합 계	1,229	1,020	순위 1,448	순위 922	순위 953
1	중국	449	341	1	587	1
2	미국	151	152	2	191	2
3	일본	85	50	4	75	3
4	이탈리아	67	24	8	37	10
5	태국	62	54	3	48	7
6	베트남	52	50	4	50	6
7	대만	43	23	9	25	12
8	독일	40	22	10	18	16
9	인디아	31	19	13	4	28
10	인도네시아	26	25	6	43	8

표 15. 부적합 사유별 현황

부적합 사유		건수	총량(kg)	금액(USD)
합 계		1,229	5,375,763	11,227,836
기준규격 위반	가공식품	56	348,611	446,210
	건강기능식품	71	18,721	574,430
	식품첨가물	26	37,835	359,036
	기구 또는 용기·포장	330	438,290	2,379,811
	소계	483	843,457	3,759,487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등 위반		280	922,890	1,971,191
미생물 기준 위반		242	1,461,239	2,454,777
이물 검출	이물	20	328,773	162,372
	금속성이물	80	447,939	386,552
	소계	100	776,712	548,924
농약 잔류허용기준 위반		17	214,815	198,910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위반		17	118,733	982,594
곰팡이 독소 잔류기준 위반		8	22,627	26,122
벤조피렌 잔류기준 위반		19	226,715	369,214
기타유해물질 위반		17	3,123	118,628
허용외 식품원료 사용		10	2,792	23,007
기타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3	329	5,667
	수입신고 위반(부적합제품 동일 제조일자)	6	85,068	124,296
	유통기한 경과, 변조	6	45,135	74,388
	제조기준 위반, 변조	14	102,015	418,060
	부패변질(성상 포함) 등	7	550,112	152,563
	소계	36	782,660	774,974



한편,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카스카라사그라다, 동규자 등) 사용 위반(10건)이 있고, 금속성이물을 포함한 이물 검출(100건)이 있으며, 기타(36건)로는 유통기한 경과 또는 변조, 제조기준 위반, 수입신고 위반 등이었다. 이렇게 부적합 처리된 품목은 전량 제조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 조치하고 있다.

일본(16)의 수입식품 부적합 사유는 우리나라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주로 미생물,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곰팡이독소, 동물용의약품, 기구 또는 용기·포장 등으로 조사되었다.

#### IV. 맺음말

국가간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식품은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수입식품에 대한 불안감 또한 높아지고 있다.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는 자국민의 소비자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각 국가별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우리나라는 수입식품 업무 종사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수입식품 검사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고, 최근 부적합 이력이 있는 제품 등을 고려하여 표본추출계획에 의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분기별로 조정하여 중점검사항목을 검사하고 있다.

또한, 해외 위해정보 등에 의한 위해우려 가능성이 있는 식품에 대해 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Codex(국제규격위원회)의 가이드라인(CAC/GL 25-1997)을 근거로 제조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그 원인을 분석 후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수입식품에 대한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매년 「수입식품등 검사연보」통계를 발간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앞으로도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소비자들의 보호를 위해 보다 품질이 우수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도록 수입업체 등에 대해 지속적인 교육, 홍보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고, 해외 위해정보 등을 수집하여 검사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노력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보건복지가족부. 식품위생법 (2009)
2. 보건복지가족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2009)
3. 한국관세무역개발원. 2009 HS품목별 수출입통관관람-품목별 수출입요령 (2009)
4. 관세청. 관세법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2008)
5.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전 (2009)
6.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공전 (2009)
7.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첨가물공전 (2009)
8. 식품의약품안전청. 유전자재조합식품관련 법령 (2009)
9.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등의 표시기준 (2009)
10.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2009)
11. 관세청. 주요무역통계. Available from: <http://www.customs.go.kr/kcsweb/user.tdf>. Accessed Aug. (2010)
12.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 관리제도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보고서 (2009)
13. 중국 세관총서, Available from: <http://www.haiguan.info/newdate/CustomData.aspx?d=0>. Accessed June (2009)
14. 미국 농무성, Available from: [www.fas.usda.gov/ustrade](http://www.fas.usda.gov/ustrade). Accessed June (2010)